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05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권칠승 · 김 윤 · 전진숙
임호선 · 임미애 · 문금주
김영환 · 윤준병 · 이연희
박균택 · 박지원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긴급 의료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그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지원 금액이 구조행위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의료비(단, 구조행위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한한다)를 반환받

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긴급 의료비 지원) ①</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u> <u>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u> <u>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인하</u> <u>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u> <u>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u> <u>히 그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u> <u>있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u> <u>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전이</u> <u>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치료</u> <u>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u> <u>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u> <u>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u> <u>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u> <u>우</u> <u>3. 지원 금액이 구조행위로 인</u> <u>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u>

	<u>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u>
	<u>4.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의료비(단, 구조행위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한한다)를 반환받은 경우</u>
	<u>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u>
	<u>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u> 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u>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 ----- ----- ----- -----.
<u>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u> 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u>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 -----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 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 ----- ----- ----- ----- -----
---	--